

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

[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]



여성가족부

Ministry of Gender Equality & Family

성희롱의 개념

성희롱이란?

- Sexual harassment : 성적 괴롭힘, 성희롱
- 업무상 위계, 위력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**성적인 언동으로 괴롭히는 것**
- 업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됨



성희롱 관련 법

•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

성희롱이란 업무,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공공단체 (이하 "국가기관 등"이라 한다) 의 종사자, 사용자
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가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
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
나.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
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



국가인권위원회
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(제2조제3호라목)



고용노동부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• 고용노동부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
관한 법률 (제2조 제2호)



성희롱 판단 기준

-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고려
-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 고려, 즉 일반인이 피해자 입장에 처했다라도 성적 불쾌감, 모욕감을 느낄만했는지가 객관적 기준이 됨
- 미국 판례 :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객관적 기준으로 채택
- 주관적인 느낌 + 제3자도 동일한 느낌 = 성희롱

(예) 학교 회식에서 모든 교사들이 교장선생님께 술을 따라드리는 문화에 의해 여교사에게 술을 따라드리라고 한 것은 성희롱일까?



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

-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은 **가해자의 의도, 고의성 여부**이다?
- **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**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?
- 성희롱을 당한 남성은 **아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?**



성희롱일까, 성추행일까?

•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 중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

- 성추행은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업무상 위계,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 형사 처벌
- 전화, 우편, 컴퓨터,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,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글, 동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



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

• 성통념

- 남자답다 vs 여자답다
- 성별화된, 성차별적인, 이중적인 성통념
- 개인의 신념체계에서 성 통념 수용



• 사회문화적 규범

- 자연스레 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규범
- 연애문화, 놀이문화, 술문화
- 성별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가부장문화
- 상하관계에서의 일차려문화

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



• 조직 내 집단문화

- 행위자의 입장을 지지·강화하는 집단문화

• 조직 내 힘의 권력 관계

- 행위자는 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
 -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권력 관계
-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

• 습관의 무서움

- 성희롱은 우리사회 왜곡된 성 담론과 성 차별적인 직장문화에서 비롯됨

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

- 성희롱은 습관

- 언어, 행동

- 평소엔 괜찮은데... 술 마시면??

- 술을 핑계로 삼지 말 것
- 술로 인한 실수에 관대하지 않기

xxxxxxxxx
Yyyyyyyyyy



입장 바꾸어보기

선녀와 나무꾼

선녀가 하늘 나라로 올라간 이유는?
선녀 입장에서 동화 다시 쓰기



서동요

서동이의 만행?



입장 바꿀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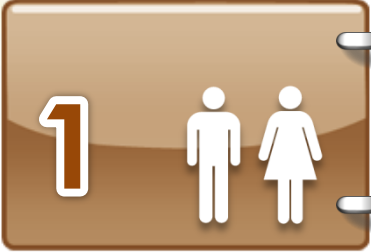
나에겐 장난이었지만 상대방에겐 **동력**일 수 있다.

.....

나는 선의였지만 상대방은 **불쾌감**을 느낄 수 있다.



성희롱 성립 요건

- 

- 행위자와 피해자
- 

-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
- 

-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
 - 성적 언동, 그 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

성희롱의 유형



육체적 행위

입맞춤이나 포옹,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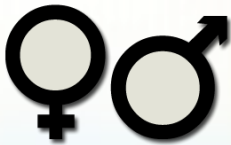
언어적 행위

음란한 농담을 하거나
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
평가를 한 행위

시각적 행위



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
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
보여주는 행위
(컴퓨터, 핸드폰 포함)



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
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

성희롱 사례

1

사무실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
노골적으로 묻고, 수고한다며 엉덩이를
치거나, 허리를 잡는 등의 성적 언동으로
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줌

2

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
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묻는 등 성희롱 발생
- 행위자는 성희롱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하였으나
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등
기관 내에서 사건 조사 및 피해자 구제조치가
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
-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
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지 않아
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



성희롱 사례기

3

"아이 하나 더 낳아.
오늘 밤 집에 가면 이불 속에서 신랑에게
하나 더 낳자고 해"
돈이 많이 들어 못 낳는다고 하자
"뭐가 걱정이야, 이거 먹이면 되는데 "
라며 볼펜으로 가슴을 누름

4

업무 협의를 마친 후 편지를 받았는데
편지에는 클림트의 '키스'와 노골적으로
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있었음



성희롱 피해 시 대처



피해자

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
피해 당한 경우 문제를
공론화 시킨 후 해결 노력



기관(직장)에 성희롱 고충 신고



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



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

기관(직장)

공정한 사건조사 및 처리
자체 예방지침에 따른
사건 접수 및 처리



- 신고 접수, 상담
- 사건조사 및 처리
- : 행위자 제재 (징계 등)
- 피해자 보호 및 구제
- 재발방지대책 추진



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



상대가 관참을 거라는 것은 **나만의 착각**일 수 있다.

의사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다는 것은 **비겁한 변명**에 불과하다.

술 때문에 실수했다는 핑계는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.

행위자가 된 경우 상대방의 불쾌감인 거부의를 받아들이고 **진심으로 사과**한다.

공적인 업무와 **사적인** 업무를 **구분**한다.

상대방의 **의견·인격**을 **존중**한다.

불필요한 신체접촉, 언동을 **조심**하고, 회식 자리 등에서 원하지 않은 행동을 **강요하지 않는다**.

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**사적인 만남을 강요**하지 않는다.

부하직원에게 '딸 같다', '아들 같다'고 하면서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**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**.

기관에서 해야 할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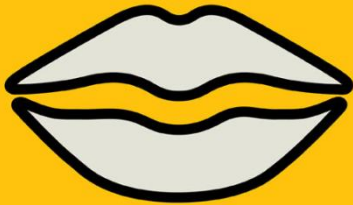
1.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 2.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
 3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
 4.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
 5.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
 6.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
- ※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

【공공기관 성희롱-성매매 예방 통합관리시스템】
[http:// shp.mogef.go.kr](http://shp.mogef.go.kr) 02-736-3001



성희롱! 5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5초만 생각하면 성희롱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말하기 전에



쳐다보기 전에



행동하기 전에

5초



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
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!



여성가족부

Ministry of Gender Equality & Family